

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류안내

1/2

※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은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접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청약자 (본인)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'청약Home'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※ 단,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
	○		특별공급신청서		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, 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는 생략
	○		무주택서약서		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	신분증	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		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)
	○		인감도장		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청약자 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청약자 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제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	○	복무확인서	청약자 (본인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※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)
	○		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청약자 (본인)	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/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발급기준 : 본인 발급 / 용도 : 위임용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
	○		위임장	-	주택전시관 비치(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인감증명서와 대조)
	○	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“소형·저가주택 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자료	해당서류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
※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1.26.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,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면 폐기합니다.